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0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일성건설(주) ②신동아건설(주) ③(주)세진에스엠씨 ④(주)화성개발
나. 전화번호 : ① 02-3271-6000 ② 02-709-7114 ③ 02-784-1451 ④ 053-715-3000

2. 명칭 : 순환 구조형 실시간 다항목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을 적용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 (HIGH CLEAN WATER TANK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항균제와 천연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항균 SMC 패널과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및 관리가 가능한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 및 내부보강재의 STS 304 + PE 코팅 처리로 세균의 증식 방지, 보강재의 부식방지가 가능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 공법임.

<범위>

신청기술은 항균제와 화강섬록반암 가루, 알칼리 휘석, 숯, 녹차 가루, 쑥 가루 등의 천연 첨가제를 혼합하여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Press에 의해 균질한 형태로 생산된 항균 SMC 패널과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및 관리가 가능한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 개발, 내부 보강재의 STS 304 + PE코팅 처리로 세균의 증식 방지, 부식 방지, 수질 오염 방지가 가능한 내진 구조형 항균 SMC 물탱크(HIGH CLEAN WATER TANK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0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추진계획 후속으로 사업자의 의무 미인지에 따른 의무위반 예방 및 적법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임대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고지한 의무확인서를 삽입하고,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항목을 추가하며,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면 소재지를 자동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추가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개정(별지 제2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행정처분 현황을 '대상주택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역'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서 개정(별지 제5호 서식)

주택별로 말소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 말소 시 시·군·구청장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같이 받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말소 신고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함

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등 개정(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위반사항의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서 제67조제3항으로 변경하도록 함.

마. 서약서 개정(별지 제18호의6 서식)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1~2인 가구 소득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인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문구를 '가구당'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개정(별지 제18호의8 서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도록 함.

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별지 제24호 서식)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설명의무인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담보물권 설정 여부'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